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안	1154
번호	

제출일자 : 2015. 8.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 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나. 지역 문화예술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4조)
- 마. 진흥대상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군수는 행사 및 공연 위탁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아.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위원,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연 629,000,000원 정도(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사항 있음

-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으면 비공개 모집을 통한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충분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보장되므로 권고사항을 미수용.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7. 29. ~ 8.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발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

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달성군의 문화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2020년

○ 주요내용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 제5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근거 규정 마련.

### 2.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의 운영과 사업 등 하는데 필요한 비용

### 3. 관련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각종 문화예술사업 활동 및 단체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629백만원 정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풍향교 운영 및 교화사업 = 129,260,000원

○ 민속예술단체 지원육성 = 45,000,000원

○ 향사 지원 = 15,000,000원

○ 비슬산 참꽃 문화제 = 380,000,000원

○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 6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이진혁

[별 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문화예술진흥단체 운영 및 사업활동비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재원 조달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21,700	21,700	21,700	21,700	108,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607,300	607,300	607,300	607,300	607,300	3,036,5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참고 1**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